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재나20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A카드 주식회사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인

담당변호사 김용대, 양희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2. 22. 선고 2012가소6321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나5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11. 7.

주 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39,865원 및 그 중 7,965,594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C[피고의 전 남편으로서 원고는 제1심 법원에 C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및 C의 2회 변론기일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되었다]과 피고는 1987. 3. 20.경 혼인하였다가 2001년경 이혼하였고, 다시 2005. 4. 22. 재혼하였다가 2012. 7. 4. 협의이혼하였다.

2) 피고는 C와 재혼할 당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 모텔을 운영하였다.

나. C의 이 사건 가족카드 부정가입 등

1) C은 2011. 5. 8. 위 D 모텔 카운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고가 C 명의 가족카드(카드번호: XXXX-XXXX-XXXX-이하불상, 이하 '이 사건 가족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카드신청파일을 작성한 후, 원고의 고객센터 소속 직원에게 위 카드신청파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2) C는 위 가족카드 신청 당시 신청인 본인란에 피고의 한글이름과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는 '010-□□□□-□□□□'이라고 기입하고, 가족1란에 자신의 한글이름과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는 '010-□□□□-□□□□', 관계는 배우자라고 기입하였다.

3) C는 그 무렵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가족카드를 교부받아 2011. 6.경부터 수백만 원씩 할부로 계속 사용하였고, 그 결과 2012. 4. 12. 현재 피고 앞으로 7,965,594원의 카드 이용대금과 이자 74,275원이 연체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11. 3. 20. 이후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의 연체이자율을 29.0%로 정하고 있다.

4) C는 2012. 10. 19.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사전자기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기록 등 행사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약4343로 약식기소되어 2012. 11.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2. 4.경 C에 대한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원고는 2012. 7. 30.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소6321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족카드의 이용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2) 피고는 제1심 법원에 답변서, 2013. 1. 7.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A카드신청서)상 신청인 서명란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이 없으며, 신청서 신청인란 기재도 피고와 가족1 C에 대한 연락처가 별도 기재토록 되어있음에도 C의 연

락처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신용카드 발급회사로서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 직원은 피고의 항의에 대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피고와 통화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피고와 원고 담당직원 사이의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 녹음 자료를 제출토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 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나5013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 16. 위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76680 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항소이유로, 피고도 이 사건 가족카드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알아야 가능한데 C가 이러한 피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가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족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C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사실상 수년째 별거 중에 있었고, 피고는 위 D 모텔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였는데 C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를 부정으로 발급받아 피고 모르게 카드대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므로, C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으로 발급신청을 하고 원고가 과실로 발급하여 C가 사용한 이 사건 카드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

을 질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5) 원고는 항소심 2013. 7. 18.자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2009. 4. 16. 피고에게 하이패스카드를 발급할 당시 피고에게 피고의 휴대전화번호 '010-△△△△-△△△△'로 전화하여 피고 본인 확인 후 동의를 받고 위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녹취록(갑 제1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항소심 판단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항소심 종결 때까지 끝내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의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통화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의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하여 녹음한 원고 담당직원과 피고, C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갑 제14호증)을 제출하였다.

7) 그런데 이 법원이 위 통화 녹음 파일을 검증한 결과, 원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가족카드신청서에 기재된 '010-□□□□-□□□□'로 전화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족카드를 신청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행하였는데, C가 위 담당직원의 전화를 받은 뒤 피고라고 사칭하면서 남성 음성으로 대답을 하는데 대하여 위 담당직원은 지금 전화를 받는 사람이 피고가 맞느냐, 혹시 C 본인이 아니냐고 묻기까지 하였음에도 여성인 피고의 본인 확인을 마친 것으로 끝내고, 원고 담당직원이 이 사건 가족카드 명의인이 될 C와 통화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니 피고를 사칭한 C는 C의 휴대전화가 정지되었다면서 지금 통화하는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통화할 수 있다고 하였고 원고 담당직원은 다음 날 위 '010-□□□□-□□□□'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C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 남자와 통화를 끝내고는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절차와 무관한 녹취록이며,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절차 시 남자인 C는 여자인 피고의 목소리를 흉내 내 본인 확인을 한 후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재다85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가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가 발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3, 8, 9, 12호증, 을 제5호증의 3, 6, 7,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및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계약 체결의 구조 및 형태가 전자금융거래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를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C가 배우자인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가 이미 여러 차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 동의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사용하도록 위임하였으며, C가 피고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관련 거래를 하여 오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방치해 오는 등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족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신용카드업자인 원고가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회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4)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과 관련한 피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는 원고가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에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

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피고와 원고 담당직원 사이의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 녹음 자료를 제출토록 해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2009. 4. 16.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가족카드가 아닌 하이패스카드를 발급할 당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본인 확인 및 동의를 받은 녹취록(갑 제12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통화 녹음 자료(갑 제14호증)는 항소심에서 검증되지 못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 검증된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의 과실 유무 판단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통화 녹음 자료(갑 제14호증)가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후에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를 피고가 알고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인터넷으로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임 또는 누설하였으므로, C

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가족카드의 이용대금의 원리금 8,039,865원 및 그 중 원금 7,965,5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에 피고의 공인인증서 등이 사용된 점,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 절차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의 일치 여부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는 C가 사용하는 다수의 피고 명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그 사용 동의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은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결제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용카드의 발급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달리 신청만으로 당연히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의 심사를 거쳐 카드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것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필요할 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신청서에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와 C의 휴대전화번호가 같은 번호로 적혀 있었던 점(010-□□□□-□□□□), 피고가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이전에 원고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등 원고의 직원들과 전화를 할 때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010-△△△△-△△△△'로 밝혀 왔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와 C의 휴대전화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재차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010-□□□□-□□□□)로 전화하였는데 이때 남성인 C가 여성인 피고임을 사

칭하여 본인 확인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담당직원은 피고가 맞는지, 혹시 C가 아닌지 추가로 질문하였을 뿐 다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원고의 담당직원이 C의 음성을 듣고 위와 같이 추가로 질문한 것은 위 음성을 남성인 C의 음성으로 의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담당직원은 만연히 C의 말만을 믿고 본인 확인을 마친 것으로 끝내고 이 사건 가족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이경선

판사 윤민수